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2016. 5. 12. 규칙 제2354호
전부개정 2021. 4. 9. 규칙 제27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학원”이라 함은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전공, 학제 전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대학원생”이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③ “학업 및 연구”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④ “연구결과물”이란 논문이나 간행물 등 연구출판물을 포함한 대학원 과정 중에 창출된 모든 지적창작물을 말한다.

⑤ “구성원”이라 함은 부산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등 부산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교수, 직원, 연구원 등 부산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⑥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관련 법규와 「부산대학교 학칙」 및 그 밖에 규정들에 기재된 정의(定義)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제4조(대학원생과 대학 구성원 등의 책무) ① 대학원생은 학업에 전념하여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고, 다른 대학원생의 권리와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학업과 책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지도교수와 관련 구성원에게 알리고,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부산대학교의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이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5조(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건강과 휴식 및 안전, 혼인 및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을 대학원생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등권) 대학원생은 부산대학교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사생활의 자유와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부산대학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9조(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내와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제10조(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을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대학원생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따라 연구출판물의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창출된 연구결과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갖는다.

제12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평가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원생은 그 결과를 알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의사결정참여권과 자치조직 결성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의 채용 조건과 방식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고, 조교로 채용되는 경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이 장학조교, 연구조교, 학생 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제15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에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장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제17조(문제해결절차에 관한 권리 등)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 받은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타인의 사생활보호 등 정당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이 제2장의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신고한 경우 이를 접수한 대학원이나 그 밖에 관련 기관은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해당 기구는 관련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를 진다.

③ 대학원생은 침해 사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등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대학원생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상설기구 운영)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생과 학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며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규칙 제2354호, 2016. 5. 12)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736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